1. 세정 · 복지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자동차세	 2023년 공제율 7% 1월 : 연세액 x 334/365 x 0.07(7%) (연세액의 약6.4% 세액공제) 3월 : 연세액 x 275/365 x 0.07 (연세액의 약5.27% 세액공제) 	 2024년 공제율 5% 1월 : 연세액 x 335/366 x 0.05(5%) (연세액의 약4.6% 세액공제) 3월 : 연세액 x 275/366 x 0.05 (연세액의 약3.8% 세액공제) 6월 : 연세액 x 184/366 x 0.05 (연세액의 약2.5% 세액공제) 9월 : 연세액 x 92/366 x 0.05 (연세액의 약1.26% 세액공제) (연세액의 약1.26% 세액공제) (2025년 이후 공제율 3%) 	「지방세법 시행령」 (`20. 12. 31.)
연납 공제율 조정	- 6월: 연세액 x 184/365 x 0.07 (연세액의 약3.52% 세액공제) - 9월: 연세액 x 92/365 x 0.07 (연세액의 약1.76% 세액공제)		세정과 세정팀 (8082-5504)
주거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4인 가구 선정 기준 2,750,358원	「주거급여법」 (`24. 1. 1.)
상향			도시재생과 주거복지정비팀 (8082-6562)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관계부서
생계급여 선정기준 확대	지원자격: 중위소득 30% 이하 2023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지원금액 가구 지원금액 1인 62만 3천원 4인 162만 1천원 2인 103만 7천원 5인 189만 9천원 3인 133만원 6인 216만 8천원 (※1인 증가시마다 262,076원씩 증가)	 지원자격: 중위소득 32% 이하 (*2017년 이후 최초 생계급여 지원기준 상향)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액 가구 지원금액 가구 지원금액 1인 71만 3천원 4인 183만 4천원 2인 117만 8천원 5인 214만 3천원 3인 150만 9천원 6인 243만 8천원 (*1인 증가시마다 286,920원씩 증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23.11.17) 복지지원과 기초생활팀 (8082-5763)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복지급여 지급 기준 (2024. 1. 기준) -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 가족지원법」 제12조 ('24. 1. 1)
			가족보육과 가족여성팀 (8082-5803)